

# 규 칙

제26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「순천시의회 사무기구  
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」을 순천시의회 규칙 등 공포에 관한  
규칙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.

순천시의회 의장



공공 행정관

2022년 7월 25일

순천시의회 규칙 제57호

붙임 순천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

# 순천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

「순천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행자위전문위원은 수석전문위원으로서 사무국장의 지휘를 받아, 제2항에 규정한 사무 외에 사무국의 행정사무를 겸임한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전문위원) ①·②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3조(전문위원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③ 행자위전문위원은 수석전문위원으로서 사무국장의 지휘를 받아, 제2항에 규정한 사무 외에 사무국의 행정사무를 겸임한다.</u></p>